

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중개정규칙안

- 검 토 보 고 -

제안이유

- “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”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, 심사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

주요골자

-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구성인원을 7명 이내로 함
(안 제4조제2항)
-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�록 함(안 제4조제2항)
-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제3항)
- 공무국외여행심사를 아니할 수 있는 범위를 “6명”에서 “7명”으로 조정함
(안 제4조제5항)

관련법령 및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의회규칙)

검토의견

- 본 개정규칙안은 군의회의원중 7인을 초과하는 인원이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 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구성인원과 위원의 임기, 심사범위 등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개선·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규칙의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.